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

- 한국종합화학(주)의 청산 사례* -

박 환 일**

< 목 차 >

I. 사 례	IV.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II. 법률 이슈의 정리	V. 청산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III.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I. 사례

X화학공업주식회사(“회사”)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던 정부투자기관인 종합화학회사였다. 설립 후 10여 년간은 석유화학공업 관련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서 번창하였으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그 부산물을 이용하여 적벽돌을 생산하는 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수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만들수록 손

* 본고는 한국산업은행이 2004년 4월 발간한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청산백서」를 회사의 청산에 관한 문제해결식 사례로서 재구성한 것이다. 교재로서의 목적상 일부 사항은 생략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동 백서를 그대로 따랐다. 산은의 백서는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나자 대주주가 청산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위와 산은의 업무처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발표를 허락해 주신 산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해를 보는 영업구조라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외부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회사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게 한 결과 정부와 대주주 측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사라진 이상 하루 속히 자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법에 의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회사 자산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은가? 그 밖에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종업원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청산 결정에 틀림없이 반대할 터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주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

II. 법률 이슈의 정리

위의 사례는 재정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¹⁾ 방안 중에서 清算을 택한 경우이다. 회사의 당면 문제가 사업구조상의 문제(operational problems)인지, 부채와 자본구조상의 문제(financial problems)인지에 따라 기업회생(turnaround, reorganization) 또는 재무구조의 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한다.²⁾ 본건은 회사의 대주주와 채권자, 경영진이 전문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³⁾ 경제적 측면과 재정상태에 대한 검토를 마친 케이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업경영 및 재무관리 측면의 논의는 제외하고, 회사를 청산하기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또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

1) 구조조정이란 영어의 'restructuring'에 해당하는 말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경영효율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부문 또는 부서의 통폐합, 조직개편, 종업원의 명예퇴직·해고 등을 수반한다. 상법상으로는 영업양수도, 기업인수·합병, 분할, 지주회사/자회사의 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구조조정은 정상기업까지 포함하여 사업구조, 재무구조는 물론 지배구조 및 원가, 이익, 매출 등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규진 외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연구회, 「기업구조조정 총설」, 첨단금융출판사, 2006.4, 69면.

2) Mark S. Scarberry, et al, *Business Reorganization in Bankruptcy - Cases and Materials* Third Ed., Thomson/West, 2006, p.220.

3)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문제점을 구명하는 데 경영진과 대주주, 채권자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회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진의 대책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경영진과 채권자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Weil, Gotshal & Manges LLP, *Reorganizing Failing Businesses -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f Financial Restructuring and Business Reorganization* (Revised Edition) Volume I, ABA Section of Business Law, 2006, I-2.

엇인가, 청산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청산을 앞두고 법적인 관점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 in legal terms)을 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법률 이슈를 정리한다면, 이 회사는 비록 정부투자기관⁴⁾이지만 자회사까지 거느린 주식회사로서 그의 해산·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현실적으로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일반적으로 회사는 무슨 원인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청산하는가?
- ② 제일 유력시되는 회사 자산 및 자회사의 매각방법은 무엇인가?
- ③ 종업원들(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고용승계를 요구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④ 지역사회와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 ⑤ 세금 기타 청산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발채무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⑥ 끝으로 회사의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III.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1. 기업구조조정과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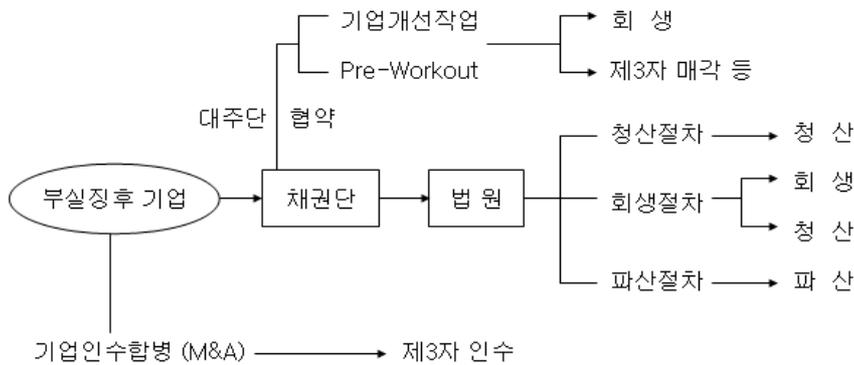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경영환경이 급변하였을 때 생존 내지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업 규모가 크고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가급적 존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없는 한계기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정리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거나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는 일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⁵⁾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⁶⁾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4) 종래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제정)이 시행되었으나,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역시 이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로 회사정리·화의절차가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제도로 미흡한 데다 부실기업의 퇴출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06년 4월 1일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도산절차가 법인, 개인의 구분 없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이원화되었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채권자협의회를 강화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기존경영자를 관

<그림> 부실기업의 처리 흐름도



자료: 한국산업은행, 기업도산법해설, 1999, 6면을 재구성함

그러나 본건은 부실의 원인이 채무자회생법, 기촉법에 규정된 변제불능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X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다음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의 처리대책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법원을 중심으로 진행(court-supervised insolvency proceedings)되는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고, 후자는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빠진 기업에 채무상환을 연장해주는 대주단협약⁷⁾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out), 프리 워크아웃, 청산절차 등 채권은행 중심으로 실시하는 구조조정 방안(out-of-court voluntary restructuring)이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여 기업을 살리고, 한계기업을 원활하게 퇴출시키며,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다. 본건의 X회사는 전문 컨설팅회사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결과 원재료의 석유 의존도가 높고, 특히 수산 화알루미늄 공장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원거리 수송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리인(debtor in possession: DIP)으로 두고 M&A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6)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황이 어려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관리 또는 주채권은행의 은행관리를 통해 회생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본래 2005년 말까지 시행되는 限時法이었으나 다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7)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8년 4월 건설사의 대주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협약을 맺었다. 심사 결과 부실이 심한 건설사는 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의 구조조정을 받도록 하고, 건전한 회사에 대하여는 대출기한을 1년간 연장하거나 신규 용자를 실시하게 된다. 건설사에 이어 조선사에 대해서도 대주단협약이 시행되었다.

청산절차를 오래 끌수록 존속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X회사는 전문 알선회사를 내세워 M&A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할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3차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⁸⁾ 결국 합병이나 파산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적용하여 청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일반적인 청산절차

2.1. 청산의 의의

회사의 청산(liquidation)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본래의 활동을 마감하고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사무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순서로 이루어진다.

<표> 청산과 파산 절차의 비교

구 분	청 산 (liquidation)	파 산 (bankruptcy)	
근거법	○ 상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시원인	○ 파산, 합병·분할·분할합병 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채무초과 ○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채무완제에 부한 경우	
목 적	○ 회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에 게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	
성 격	○ 화해적 성격, 재판외 절차	○ 강제집행적 성격, 재판상 절차	
기관 및 대표기관	○ 주주총회, 청산인(회), 감사 ○ 대표청산인	○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 파산관재인(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의 행사)	
환가방법	○ 회사의 임의환가	○ 채권자집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	
법원 역할	○ 법정절차에 대한 감독	○ 파산재단의 공평분배를 위한 엄격한 감독	
특 징	장 점	○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절차진행 ○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 절차의 공정성 ○ 강제절차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 용이
	단 점	○ 절차진행의 공정성 시비 우려 ○ 청산조건 합의의 불완전성	○ 비용부담, 소요기간 장기화 우려 ○ 대외신용도 하락 가능성

자료: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청산백서, 2004, 11면을 재구성.

8) X회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일본의 알칸 니케이사는 실사 결과 드러난 영업구조상의 문제점에 난색을 표하고 입찰을 포기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인 데다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기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청산방법을 회사에 임의로 맡길 수 없고 상법에서 강행법규로 규정[法定清算]⁹⁾하고 있다.¹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2항, 제118조).

청산을 하는 회사, 즉 청산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와 동일한 權利能力을 갖는다. 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으며, 해산 전의 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청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¹¹⁾

2.2. 청산인의 임무

주식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면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이 각각 이에 갈음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liquidator)이 되는 것이지만 정관에서 청산인을 따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상법 제531조 1항 본문). 업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주주총회와 감사는 존속하지만, 감사는 청산인을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 2항, 제411조). 청산인의 員數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청산인회와의 관계상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¹²⁾ 청산인과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서와 같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상법 제542조 2항, 제382조 2항).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를 행한다. 이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는 바, 이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535조 1항).

9)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어느 주주도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경우에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다. 大判 2005.4.15. 2003도7773.

10) 정찬형, 제11판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08, 1108면.

11) 이철송, 제15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8, 148면.

12) 정찬형, 앞의 책, 1109면.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상법 제535조 2항). 현실적으로 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변제가 금지된다고 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상법 제536조 1항). 다만, 소액채권, 담보부채권 기타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상법 제536조 2항).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완제불능인 경우 외에는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더라도 무방하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변제할 수 있고, 불확실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변제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 1항, 제259조).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의 추심 및 현존 재산의 환가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영업양도도 환가의 한 방법이지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74조 1호). 만일 회사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2조 1항, 제254조 4항, 민법 제93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주주에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상법 제542조 1항, 제260조, 제538조 본문). 그러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예컨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538조 단서, 제344조 1항). 일단 주주들에게 잔여재산 분배가 개시되면 주주들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즉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7조 1항).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위 채권자들은 권리를 상실한다. 일부 주주에 대해서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주주에게는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위 분배되지 않은 재산에서 공제한다(상법 제537조 2항).

그 밖에 청산인이 해야 할 사무로는 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상법 제532조), 법원에 대한 신고, 회사재산의 조사 및 주주총회 앞 보고, 법원 앞 제출(상법 제533조, 제534조) 등이 있다.¹³⁾

13) 법원이 직권을 발동하여 청산절차를 감독하려 하지 않는 한 청산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권을 발동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란 거의 없으므로 법원의 청산절차 감독은 사실상 청산인의 신고와 재산목록대차대

2.3. 청산의 종결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청산사무의 종결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40조 1항). 주총의 승인이 있으면 청
산인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해제된다(상법 제540조
2항). 다만,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당연히 청산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¹⁴⁾
청산의 모든 절차, 즉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이 모두 끝나야 청산이 종결
된다(상법 제542조 1항).¹⁵⁾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 보존인과 보존방법에 대
하여는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상법 제541조).

IV.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1. 청산회사의 개요

앞의 사례에서는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X회사는 여러 화학공업 관련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이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인 석유
화학공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인 이 회사는 화학공업 관련회사를 세우고 키
우고 민영화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추진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설립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한양화학, 동서석유, 한국카프로락탐, 여수석유, 호남에틸렌 등 5개 회사는 민영화
하였으며, 1980년과 1982년에는 각각 한국옥탄올을 흡수합병(울산에탄올 공장)하고 나주

조표의 제출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산한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관하여 법원이 감
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청산인이 제출한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등에 기초하여 청산법인
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
으면 법원은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이동원, “법인의 破産과 清算의 경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한국도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
료집, 2009.1.31, 16면.

14)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
한 것으로 그 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大判 1968.6.18. 67다
2528; 2002.7.13. 2000두5333.

15) 이 회사는 2001년 3월 청산을 위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열고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법원 앞 재산상태 보고를 한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옥탄올 공장을 준공하는 등 생산설비를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따른 비료 원가의 급등으로 석유의존도가 높은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회사는 1980년대 후반 직영공장은 전부 매각하고, 투자회사는 남해화학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기로 하는 등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수익성 있는 신사업 개발을 통해 회생(turnaround)을 도모하고자 한국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추천받은 여러 사업 중에서 수산화알루미늄¹⁶⁾ 사업을 목표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공장을 건설(1993~1996년)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사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애로사항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매년 거액의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이 회사를 민영화 계획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산화알루미늄 공장과 남해화학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당국은 2000년 2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회사를 청산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¹⁷⁾

2.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정부투자기관인 X회사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청산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대주주가 정부방침에 따라 해산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설립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산결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임시주주 총 소집요구에 불응하였다. 회사 경영진보다도 노동조합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회사의 청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에 정부와 대주주는 노조에 대해 청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경영진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면 후임 사장을 선임하여 청산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수는 240여 명에 불과하였지만 조직적으로 청산사무를 방해하고 파업을 벌이는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공장설비를 처분하는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 세금 문제와 채무

16) 水酸化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은 알루미늄의 수산화물로 물과 장시간 접촉하면 겔化하는 속성을 이용해 흡착제·이온교환제, 크로마토그래피의 고정제 등으로 쓰인다. 또 산화알루미늄의 제조원료, 종이의 중량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섬유 속에 채우면 방수성이 커지는 데서 방수포의 제조 첨가제, 제산제로도 쓰인다.

17) 정부(舊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2000.2) 때 이 회사의 조기 청산을 추진하되 산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제7차 회의(2000.9)에서는 그 해 11월까지 해산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구체적인 청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불이행에 따른 우발채무 문제가 돌출하여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2.1. 공장설비의 매각

청산업무 중의 중요한 것의 하나는 청산인이 청산회사에 속하는 주요 재산을 적절히 환가처분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최대한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장설비를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려면 영업양도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순재산 가치를 초과하여 생산과 영업의 노하우, 고객관계 등에 기인한 영업권(goodwill)의 가치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력공장인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공개입찰에 부쳐 원매자에게 일괄 매각(bulk sale)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운영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인 데다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승계는 커녕 회사재산의 매각도 기대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결국 고용승계는 유보하고 우량 자산만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나,¹⁸⁾ 수산화알루미늄 공장 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1999년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세 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입찰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국내외 잠재적 매수자들과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18)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유보하고 공장 자산만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 1996년 12월 삼미특수강이 봉강부문을 포항제철의 자회사에 매각하였을 때 관할 창원세무서에서는 이를 법인세법상의 '사업양수도'로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수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영업양도로 보았다. 이러한 법률판단은 1998년 감사원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서울에 올라와 노숙 투쟁을 하던 해당 근로자들은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1999년 초 서울고등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도 재배치한 포항제철의 입장을 존중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즉,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하고, "포항중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중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2001.7.27. 99두2680.

全無하였다.

정부와 대주주는 2001년 초부터 다시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표청산인 및 은행관리단 주관 하에 공장의 계속 가동을 전제로 매각가격은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¹⁹⁾

2001년 3월 대주주는 인수의향을 밝힌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고용보장에 대한 회사·노조·인수자 간의 협상이 비교적 원만히 타결되었다. 1차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접수한 결과 2개 응모자 모두 기본요건에 미달하여 인수금액 및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2차 의향서를 받기로 했는데, 고용승계를 약속한 회사가 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데 응하여 거래가 최종 성사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자산도 원재료와 저장품은 인수자에게 매각하고, 제품·반제품(재공품은 가능한 한 전량 제품화한 후)은 청산사무국에서 자체 매각하거나 위탁판매하기로 했다. 그 밖에 매각 가능성이 없는 물품은 원매자 앞 할인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본사의 매출채권과 보유 유가증권, 미수금, 비품 등은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inspection)를 거쳐 조기에 정리 환가하도록 했다.

2.2. 노조 파업 및 종업원 대책

회사의 청산 방침이 결정되자 종업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등 파업을 벌였다. 파업 종업원들의 요구사항은 종업원 및 노동조합의 승계를 인정하고 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주주 측은 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청산을 주도하면서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주주는 노조측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제시안을 요구하기를 거듭하여 6차례에 걸친 노조 제시안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²⁰⁾ 2001년 3월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산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상 청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청산과정에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공장의 양수도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힘썼다.

19) 정부의 제8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2001.1.16)에서 이같이 결정되었다.

20) 이 회사 노조는 그 당시 석탄합리화사업단 근로자대책비를 원용하여 평균임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대주주 측은 유사 타기관의 사례를 참조하되 공기업으로서 국민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그리하여 직급별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14개월, 18개월분을 지급하고, 재취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보았다.

정부와 대주주는 현실적으로 자산인수 방식 외에는 공장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인수자가 나서면 협상과정에서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하였다.²¹⁾ 그러나 노조는 고용승계 없는 매각은 있을 수 없다며 위의 정부방침과는 다른 논리로 무조건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이러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약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을 인정해주고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한 특정 기업을 지지하는 한편 더 많은 매수가격을 제시했으나 고용승계 약속을 거절한 다른 매수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거부 계약서를 전직원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등 원활한 거래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노조에서 주장하는 고용승계란 단순히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원 자신들의 취업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되어 버렸다. 결국 전체 직원 225명 중 오직 45명만이 새로운 회사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셈이 되어 공장 가동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전직원의 20%만 고용승계하는 격이 되었으나 인수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노사갈등은 해소되었다.²²⁾

2.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회사의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이 대불공단에 위치해 있어 관할 영암군에서는 2000년 12월 청산에 반대하는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다. 영암군 의회는 진정서에서 소재국산화를 위해 국가예산을 들여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공장을 가동한 지 채 4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청산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21) 각주 18)의 삼미특수강 사건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영업양수도를 기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공장자산 이외에 종업원들의 대부분을 함께 인수하는 영업양수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단순히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즉, 매매목적물은 봉강강관 부문의 생산시설과 그에 관련된 자산에 한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은 이를 승계하지 않음을 계약상으로 명백히 했다. 그리고 자산매매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기존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인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삼미특수강은 이러한 취지를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인수자에 입사하지 못한 종업원들을 포함한 삼미특수강의 종업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인수자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함으로써 인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인수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의거 신규 채용하되 인수자로의 입사를 희망하는 삼미특수강의 종업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던 것이다. 大判 2001.7.27. 99두2680.

22) 노조측은 그 밖에도 청산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가 하면, 간부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고 파업을 주도하여 근태상황을 확인할 방도가 없었음에도 회사에 월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노동법을 원용한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하였다.

350여개 수요업체 및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 250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극한의 노사대립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보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원매자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정부주도의 화학산업 육성 필요성 감소 및 경영상태 악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절차를 추진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공장의 계속 가동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에 부쳤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수포로 돌아갔으나 청산과정에서 합당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공장시설의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나타나면 공장의 일괄 매각을 통해 기존 시설의 계속 가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파업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직원들이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청산하더라도 목포 경제권에서의 제조업 종사자 중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0.8%, 고용 기준으로 1.8%에 불과하여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사 제품의 수요처는 120여개사에 달하지만 수요처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산에 따른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4. 세금 문제

정상적인 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청산 前段階에서 공장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노조의 파업(파업시기 2001.11.18)으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웠다면 회사의 해산(주총의 해산결의일 2000.11.20 또는 해산등기일 2001.1.3)과 폐업(공장명도일 2001.6.12 또는 폐업신고일 2001.11.15)을 가리는 시점이 중요해진다. 여러 투자회사를 처분하였던 만큼 그 매각대금이 청산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법인세의 환급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既납부 법인세의 更正청구 및 환급신청이 기각 당할 경우에는 이것이 그대로 우발채무화하고 대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세무서에 대한 소명 나아가 국세심판 청구를 통해서라도 회사의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남해화학 주식을 장기 할부로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 중 미수금관련 296억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2001년 중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금액이었다. 회사측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 시에는 회수기일 미도래분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납부 세금 중 271억원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에 경정청구 및 환급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자회사인 남양화성 앞 대여금 3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38억원은 공장물건의 감정금액(65억원)이나 처분금액(47억원)을 감안할 때 도저히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불합리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 결과 2002년 11월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하였으나 국세심판원²³⁾에서는 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공장을 명도하는 등 사실상 폐업을 한 시점²⁴⁾부터는 주식할부 미수금에 대한 기납부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²⁵⁾ 다만, 남양화성 매각대금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산과정에서 실체가 치보다 低價로 서둘러 매각함으로써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2.5. 장기구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회사는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의 보크사이트 원료를 코말코 알루미늄사(Comalco Aluminum Limited)로부터 장기 베이스(1995~2004년 10년간)로 들여오고 있었다. 코말코 사는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²⁶⁾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2001년 4월 채권신고를 하였다. 코말코 사는 그 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수 차례 감액하였을 뿐 청구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230여만불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발생가능성이 상존하여 청산절차의 종결에 지장을 주었다.

회사측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계약서 상의 불가항력에 해당하고,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의 인수자로 하여금 계속 코말코 사의 보크사이트를 구매하도록 주선, 협력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코말코 사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액한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청산사무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23)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바뀌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24) 공장을 매각하고 해산등기를 마쳤더라도 공장을 명도할 때까지 또는 원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생산공정의 固化를 막기 위해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야 하므로 폐업 시점은 해산등기일 이후가 된다.

25) 폐업일을 파업개시일(2000.11.18) 또는 해산등기일(2001.1.3)로 보는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 3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18.25%를 물게 된다.

26) 이 회사는 2004년까지 10년간 코말코 사로부터 연간 22만톤 이상의 보크사이트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장기구매계약의 준거법은 잉글랜드법,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주주측이 코말코 사가 이의를 할 경우 직접 이에 대응하기로 하고 청산절차를 마무리지었다.

3. 잔여재산의 분배 - 회사의 實名 공개

위의 사례에서 회사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한국종합화학”), 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산은”)이었다. 한국종합화학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식량자급자족을 위해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비료의 국내생산과 석유화학공업의 개발·육성을 위해 1973년 4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²⁷⁾

한국종합화학의 설립은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 하에 기존 우량기업인 충주비료와 적자기업인 호남비료의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이 회사는 대자본이 필요하고 수익성이 낮은 정책사업을 전개하거나, 지주회사 기능을 통하여 화학공업을 개발·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종합화학은 설립 후 10년간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취지에 부응하여 여수석유, 동해필프, 남해화학, 호남에틸렌 등 화학공업 관련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투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정부투자기관 및 지주회사²⁸⁾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하였을 때 대주주인 산은은 청산에 반대하는 회사 안팎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앞에서 설명한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1년 5월 한국화학주식회사²⁹⁾에 수산화알루미늄 공장 등 2개의 공장을 153억원을 받고 매각할 수 있었다. 잔여재산을 산은을 포함한 주주 앞으로 배분하고 2003년 12월 3년간에 걸친 청산절차를 마무리지었다.³⁰⁾

27)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청산백서」, 2004.4.1, 5면. 이 청산백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회사청산의 전말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인 산은이 청산절차의 단계별·사안별로 무슨 조치를 취하였는지 훌륭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8) 한국종합화학은 1997년 12월 한국신화, 1998년 9월 남해화학을 순차 매각함으로써 지주회사 기능이 종식되었다.

29) 대주중공업이 한국종합화학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신설회사로서 회사의 지명도(name value)를 이어받기 위해 비슷한 이름으로 상호를 정했다. 산은은 유사 상호의 사용에 따른 법적·경제적 문제에 대비하여 인수자와 대주중공업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각서와 약속어음 1매를 징구하고, 유관기관 앞으로 청산내용과 함께 유사상호의 혼동이 없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30) 산은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대주주로서 한국종합화학의 조기 청산을 위하여 ‘先 청산추진, 後 설립법 폐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000년 11월 회사의 해산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경영진에 산은 직원을 청산인으로 파견하고 그 해 12월 말에는 청산인, 감사 교체를 위한 임

산은은 1974년 한국종합화학의 설립 이래 대주주³¹⁾로서 회사를 계속 관리하여 왔다. 회사의 성장기에는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산업의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후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청산을 서둘렀다.

산은은 회사에 대한 신규사업 검토가 시작된 1990년 초 사업추진비를 제외한 사내유보금(주로 자회사 매각에 따른 자산처분이익 등)의 주주 앞 귀속을 주장하여 1991년 3월 577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남해화학 지분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한국종합화학 신규사업 추진에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시책인 민영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달리 산업자금화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회사에 대한 국내외 입찰이 수포로 돌아가자 적자를 누증시키는 가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매자를 찾기보다는 조속히 청산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보전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청산된 투자기업체에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대주주로서 원가부담이 없는 장부가(1,075억원) 기준의 잔여재산과 청산이익(819억원, 2003년도 귀속분은 367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V. 청산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1. 회사의 부실화와 민영화 추진

한국종합화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성장기를 거친 처음 10년간은 제 기능을 발휘하였지만,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회사측은 회생을 위해 합병 등 다양한 기능 재정립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였음에도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회사가 社運을 걸고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선정하였던 수산화알루미늄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영업실

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이 청산관련 감독권을 대주주인 산은에 위임하는 결의가 필요했다. 한편 200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청산에 반대하는 종업원들의 파업이 있었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은 2001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 폐지되었다.

31) 청산결정 시 한국종합화학의 납입자본금은 878억원으로 주주는 산은(98.75%), 서울은행 외(1.01%), 소액우선주(0.24%)로 구성되어 있었다.

적이 해마다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오일쇼크와 같은 외부환경이 악화된 것 외에도 남해화학 합병에 실패한 것도 큰 타격이 되었다. 1987년 12월 산업정책심의회는 비료제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고 업종별 합리화 시책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료산업의 공급유통체계를 경쟁원리에 따라 자유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아그리코 소유의 남해화학주식에 대한 지분인수를 통해 남해화학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990년 2월 대통령의 지시로 아그리코 소유 주식을 농협이 인수하게 됨에 따라 한국종합화학이 남해화학을 인수한 다음 지주관리 경영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脫肥料 사업으로 갱생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농협이 남해화학의 인수에 성공한 것은 비료사업에 농민이 주체인 농협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료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대기업을 통한 민영화도 배제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³²⁾

1990년 7월 경제기획원, 상공부, 산은 등 관계기관은 회의를 갖고 한국종합화학을 청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당장 청산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데다³³⁾ 1,680명에 이르는 소액 우선주주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기존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상공부에서는 한국종합화학을 정밀화학공업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체로 확대 개편한다는 기능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0년 7월 KIET에 신규사업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이듬해 5월 연구용역 결과를 접수하고 8월에는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시된 것은 975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수요의 85%를 충당한다는 목표 아래 전라남도 대불공단에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이었다. 이 공장은 일단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으나 가동 후에는 기대와는 달리 原價率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던 한국종합화학³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이 변화하면서 1998년 7월 한국종합화학을 정

32) 산은 기업구조조정실, 앞의 백서, 17면.

33) 청산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청산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주앞 귀속시켜야 할 재산의 배분이 무의미해지고, 산은으로서도 남해화학 등의 주식을 현물로 인수해야 하므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었다. 한국종합화학, 「종합화학 20년사」, 556면.

34) 한국종합화학은 1994년 12월 정부의 잔여지분 5%를 산은 앞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회사의 법적 지위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한 특수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동법상 산업자원부의 경영감독에 관한 규정(임원선임, 정관변경, 업무감독 및 검사)이 적용되어 산은의 주주권 행사는 동법이 폐지되는 2001년 말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부가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종합화학은 완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년 내에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왜냐하면 직영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은 국내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³⁵⁾ 조기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회사의 남해화학 지분 45%는 별도로 분리 매각하고,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赤벽돌을 생산하는 남양화성(주) 역시 본 공장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회사측에서는 시설보완투자를 하여 신제품을 생산한 다음 경영개선을 해가면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99년 대우증권을 매각주간사로 하여 세 차례에 걸쳐 국내외 잠재 매수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³⁶⁾ 실패로 끝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청산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국종합화학은 1974년 설립 이래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또한 유수의 화학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한국 최초의 지주회사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종합화학회사로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오일쇼크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석유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계속 생산한 결과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지주회사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이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을 뿐 자체적인 수익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이 바뀌면 사업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1980년대 말에 우량기업인 남해화학을 합병하여 사업다각화와 수익구조의 안정을 꾀하였더라면 그렇게 빨리 청산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1991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사업은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당시에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특정 지역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사업

35) 한국종합화학의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은 시설규모가 연산 22만2천톤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경제 규모인 60~120만톤에 크게 미달하는 데다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보크사이트 원료의 운송비 포함 조달비용이 너무 높고 환경오염물질인 폐기물(red mud)의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가동율도 42%에 불과하고 경쟁업체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水처리제나 세제원료로 쓰이는 제품 용도가 공기업에서 생산해야 할 정도로 공공성이 높지 않은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었다.

36)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1999년 2월 응찰자들의 관심이 많은 수익가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평가(주)(KMCC)에 수익가치의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³⁷⁾

이와는 달리 대주주인 산은은 비록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해 보유지분을 늘렸지만³⁸⁾ 청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재산도 유리하게 분배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후에는 회사의 사내유보금 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고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한편 회사 갱생을 위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금융지원을 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하였다.³⁹⁾ 회사가 일단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에는 산은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은행측 청산인을 선임하고 핵심부서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적 구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청산절차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무리한 요구는 일체 수용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청산절차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거액의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지지부진해지자 대주주로서 이를 감당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린 점도 특기할 만하였다.⁴⁰⁾

37) 화학저널, “한국종합화학 청산의 문제점”, 화학경제연구원, 2000.5.8.

<<http://www.chemlocus.co.kr/>>

38) 산은은 정부의 전액 출자은행으로서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增資수요가 있을 때 현금을 출자하는 대신 정부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예가 많았다. 한국종합화학에 대한 산은의 지분이 99% 가까이 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39) 청산 중의 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거래는 계속하여야 하므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회사 주총에서 해산결의가 있는 후에 대출, 예금환급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빠짐없이 채권을 신고하고, 해산 후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표청산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아두도록 한다. 만일 청산인이 추인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구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구대표자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으나 구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인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쉬울 것이다. 예금지급은 약관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면책된다. 한국산업은행, 「금융법률실무 - 여신편」, 1995.11, 721면.

40) 산은 기업구조조정실, 앞의 백서, 94~95면.

♣ 참고 문헌

- 김규진 외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연구회, 「기업구조조정 총설」, 첨단금융출판사, 2006.4.
- 이동원, “법인의 破産과 清算의 境界에서 生기는 문제들”, 한국도산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1.31.
- 이철송, 제15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8.
- 정찬형, 제11판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08.
- 장세진,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 사례집II」, 박영사, 2004.
-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청산백서」, 2004.4.1.
- _____, 「기업도산법 해설」, 1999.11.
- _____, 「금융법률실무 - 여신편」, 1995.11.
- 화학저널, “한국종합화학 청산의 문제점”, 2000.5.8.
<http://www.chemlocus.co.kr/news/documentopen.php?DocumentID=CJK20000508_03_02_W0111&Sequence=28918>
- Mark S. Scarberry, Kenneth N. Klee, Grant W. Newton and Steve H. Nickles, *Business Reorganization in Bankruptcy -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Thomson/West, 2006.
- Weil, Gotshal & Manges LLP, *Reorganizing Failing Businesses -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f Financial Restructuring and Business Reorganization* (Revised Edition) Volume I, ABA Section of Business Law, 2006.
- 인터넷 뉴스는 네이버에서 검색 <<http://www.naver.com>>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이상 인터넷 자료는 2009.1.20 최종 검색]

<Abstract>

Why and How Was the Korea Integrated Chemical Inc. Wound up and Liquidated?

Whon-II Park

This article analyzed the real case regarding the winding-up and liquidation of the Korea Integrated Chemical Inc. ("Korea Chemical").

Throughout the 1970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4, Korea Chemical had carried out its mission as a holding company in the public sector fully committed to implement the core economic development plan with regard to petro-chemical projects. But quickly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in the 1980s and the on-going privatiza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invested corporations drove Korea Chemical to divest itself of most subsidiaries except only one downstream product-using company. Several times of restructuring programs were implemented in vain because of price hike of raw materials and low productivity. The more products Korea Chemical manufactured, the more deficit it generate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and the major sharehol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concluded that Korea Chemical and its subsidiary should be wound up as soon as possible.

What was wrong with Korea Chemical? Was the financial distress caused by operational problems or debt/equity structure? Then the appropriate solutions could be adopted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urnaround or financial restructuring. As for Korea Chemical, in a simulation of legal matters, th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to put aside the question of business operations or financial management at the moment:

- i. Generally speaking, why and how could Korea Chemical be wound up and liquidated?
- ii. What was the best way to sell the properties of Korea Chemical and its subsidiary?
- iii. How could Korea Chemical negotiate with employee strikers and the trade union which demanded continual employment?

- iv. By what means, could Korea Chemical soothe and overcome the objections and discontent of community neighborhood?
- v. How could Korea Chemical treat any tax or other contingent liabilities which occurred in the course of liquidation?
- vi. How could the residual properties of the liquidated company be distributed among its shareholders?

As far as Korea Chemical was concerned, it was the failure of M&A with a productive fertilizer company and the malfunction of the newly started project company that made irreparable financial trouble.

Finally, the management and major shareholders of Korea Chemical decided to wind up the affairs of the company and dissolve it. Voluntary liquidation began when the speci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Korea Chemical passed the resolution, and the company generally ceased to carry on business at that time. If the liquidation proceeded as a voluntary winding-up,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ppointed the liquidators. The liquidators handled the corporate affairs only to complete liquidation work in a given time period.

In a capacity as the biggest shareholder and a major creditor, KDB took the initiative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ourse of liquidation. After all, KDB succeeded to collect more claims and residual properties than expected.

📌 주제어(Key Words)

해산, 청산, 청산인, 공기업민영화, 영업양도, 고용승계
dissolution, liquidation, liquidator,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transfer of business, succession of employment

논문투고일자 : 2009년 1월 15일

심사의뢰일자 : 2009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3월 20일